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239
----------	-------

발의연월일 : 2026. 6. 15.

발 의 자 : 이연희 · 박용갑 · 김남희
김정호 · 임미애 · 송재봉
안태준 · 염태영 · 문진석
이정문 · 손명수 · 최혁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자가용 화물자동차(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는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송 현장에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 운송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제3자가 이를 알선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불법 운송의 알선 행위도 처벌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 운송을 알선하는 행위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불법 유상 운송을 방지하고 화물운송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56조 및 제67조제7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 본문 중 “된다”를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하며, 같은 조 단서 중 “제공하거나 임대할”을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로 한다.

제67조제7호 중 “제공하거나 임대한”을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한”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6조(유상운송의 금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화물운송용으로 <u>제공하거나 임대할</u> 수 있다.	제56조(유상운송의 금지) ----- ----- ----- ----- ----- ----- <u>되며, 누구든지 이를</u> <u>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u> ----- ----- ----- ----- ----- <u>제공 또는 임대하거나</u> <u>이를 알선할</u> -----.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의3. (생 략) 7. 제56조를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u>제공하거나 임대</u> 한 자	제67조(벌칙) ----- ----- ----- ----- ----- 1. ~ 6의3. (현행과 같음) 7. ----- ----- ----- <u>제공 또는 임대하거</u> <u>나 이를 알선한</u> ---